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4일, 박대출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조세소위(2024.11.15.) 상정

제2차 조세소위(2024.11.18.) 상정

제3차 조세소위(2024.11.19.) 상정

제4차 조세소위(2024.11.20.) 상정

제5차 조세소위(2024.11.21.) 상정

제6차 조세소위(2024.11.2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2025. 2.11.)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대출의원)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주회사에 부여한 세제 지원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고, 법인세법 개정 이후 지주회사가 개정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10% 이상의 추가적인 지분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이라는 짧은 유예기간 동안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시장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이 법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 략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개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었음.

“현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로, 출자비율에 따른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피출자법인 출자비율에 따른 구간별 적정 익금불산입률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

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법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를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2025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u>공포한 날</u> ----- -----.
제2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u>이 법 시행일 이후</u> <u>신고하는 분부터</u> 적용한다.	제2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적용례) - ----- ----- ----- <u>이 법</u> <u>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u> <u>경우부터</u> -----.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 중 “2023년”을 “2026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 치) ① (생 략) ② 내국법인이 <u>2023년</u> 12월 31 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 할 수 있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 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2026년</u>----- ----- ----- ----- ----- --.